

祝 辭

2017. 2. 24.(금), 10:00~11:50
금융투자협회 제1회의실(13층)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유 광 열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유광열입니다.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님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I.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후준비의 필요성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금년 중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 65세 이상 인구 7% 이상 → 고령화 사회, 14% 이상 → 고령사회(UN 기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선진국이 약 70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에 비해 노인 빈곤율*은 48.5%로
OECD 평균인 11.6%의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 노인빈곤율(65세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하는 비율)
: (한) 48.5%, (OECD평균) 11.6%, (미) 18.8%, (일) 19.4%, (영) 10.5% (OECD, '12년)

또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 가량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노후에 필요한 생계자금 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가구 보유자산의 유형별 구성비('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부동산 : 68.2%, 금융자산 : 26.5% (저축 19.7%, 전월세 보증금 6.9%)

그 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국민들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의 총합은
퇴직 전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못 미칩니다.

* 주요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OECD Pension at a Glance, '13년)
: (한국) 51.2%, (미국) 78.2%, (영국) 67.1%, (캐나다) 73.1%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장수(長壽)가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수를 리스크가 아닌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뒷받침해드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개인연금법 제정안이 그 결과물입니다.

Ⅲ.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경위

정부는 지난 '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민·퇴직·개인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은 분산하기 위해
투자대상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해외 주식·채권 투자 비중 : ('11말) 9.9% → ('13말) 14.7% → ('15말) 18%
대체자산 투자 비중 : ('11말) 7.8% → ('13말) 9.4% → ('15말) 10.7%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운용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① 퇴직연금계좌와 개인연금계좌간 자산이전·과세이연 허용('16.7.14)
② 퇴직연금자산의 합성 ETF 편입 허용('16.9.27)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연금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5년 12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개인연금법 제정의 큰그림을 밝혔습니다.

이후 '16년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하고
작년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각계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더욱 다듬었고,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Ⅳ. 개인연금법 제정안 주요내용

그간 개인연금상품의 요건은 소득세법에서,
가입·운용 등에 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등
규제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및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은 T/F 운영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법률에 따라 각각 규율을 받던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하여 일원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채무건전성,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해 연금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연금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충실의무, 선관주의 의무 등을 부여하였습니다.

② 또한 국민들이 다양한 개인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마련하고,

개인연금자산의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도입하였습니다.

신탁, 펀드, 보험, 그리고 투자일임형 상품까지 하나의 계좌에 담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연금가입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였습니다.

연금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한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는 위약금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는 일정부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수익률, 수수료 등을 한눈에 비교·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타면서 수익률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가입자의 보호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다시 국민들의 연금 가입을 늘려 연금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IV. 맺음말씀

여러분!

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가감 없이 제시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정안으로 다듬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번 제정안을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실무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